

『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5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국장 최 동 문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, 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간 5년 연장(안 제3조제6항)
 - [현행] 2021.12.31. → [개정] 2026.12.31.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
 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(2021.08.20.)
 - 신·구조문대비표 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속

○ 본 조례안은

-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원활한 자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